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4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구자근 · 김예지
이성권 · 이현승 · 주진우
김희정 · 고동진 · 한동훈
조배숙 · 김은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,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미세먼지,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109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3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
같은 조 제6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며,
같은 조 제9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·② (생 략)	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	③ ----- 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	⑥ ----- 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⑦·⑧ (생 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
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.	⑨ ----- 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